시장 규제 제동… 정정보도 청구권 강화

신문·언론법 헌재 결정

윤영철 헌법재판소 소장(오른쪽에서 두번째) 등이 29일 오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선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적극적인 언론 자유 보호 장치인지 국가의 언론 자유 통제 수단인지를 놓고 논란이 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상당수 조항을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규정하면서 위헌 시비에 종지부를 찍었다.

헌법재판소는 신문법의 제정 취지가 담긴 사회적 책임 부분을 '선언적 의미'로 규정하면서 신문법이 전반적으로 언론 자유와 관련된 법률임을 강조한 대신 시장 규제 방식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핵심 쟁점이었던 언론중재법의 정정보도 청구 요건과 소송(제14조, 제26조 6항) 조항은 피해 구제를 강조한 법 제정 취지를 받아들이면서 피해 구제 절차를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새로운 권리로서 폭넓게 인정받아야 하지만 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는 절차는 가처분이 아닌 본안 소송으로 엄격하게 해서 언론사의 방어권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조**=헌재는 신문의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을 강조한 신문법 제4,5조의 헌법소원은 각하했다.

청구인들이 신군부 시절의 언론기본법에서 유래했다며 강하게 비판한 이 조항은 '정기간행물은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하고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된다'고 못박고 있다.

의견이 다른 집단이나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보도는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 내용도 담고 있다. 청구인들은 균형을 맞추다보면 결국 모든 신문이 '무색무취'할 수 밖에 없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은 언론기본법에 담겨 있다가 이 법을 대체해 만들어진 정기간행물법에서 삭제됐지만 신문법에서 다시 포함됐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 '불합리'**=공정거래법에 비해 신문 시장의 독점, 과점 기준을 느슨하게 적용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은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신문사업자를 일반사업자에 비해 더 쉽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는 신문의 다양성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 달성에 합리적 수단이 못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1사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이면 독점, 3사 합계 75% 이상이면 과점으로 규정한 반면 신문법은 1사 30%, 3사 60%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헌재는 발행부수만을 기준으로 신문시장 점유율을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시장 지배력에는 서로 다른 경향을 가진 신문에 대한 개별적 선호도도 작용한다고 판단했다.

신문의 시장 지배적 지위는 발행부수보다 독자의 개별적, 정신적 선택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이다. 시장지배적사업자에게 신문발전기금을 주지 않도록 한 규정(제34조2항2호)도 자연스럽게 위헌 결정이 났다.

주식이나 지분 취득으로 신문을 복수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제15조3항도 2명의 재판관은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4명의 재판관은 복수 소유가 언론 다양성을 저해하지 않고 오히려 기여할 수도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헌재는 복수소유 규제와 관련해 부분적 위헌성만을 인정, 입법자가 이를 고치도록 했고 겸영금지 조항(제15조2항)은 고도의 정책적 판단에 맡길 사안이라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정정보도청구권 언론자유 침해 안 해**=헌재는 정정보도청구권을 합헌으로 규정하면서 옛 정기간행물법에 보장된 반론보도청구권이나 민법상 청구권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성격의 청구권으로 판단했다.

불법행위와 관련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인정한 것이다.

언론사의 고의, 과실이 없거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돼 형사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헌재는 정정보도 소송을 낼 때 가처분 절차에 의하도록 한 규정(제26조6항)은 정정보도 청구가 본안소송의 성격이 강하고, 가처분의 경우 언론사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약한다고 판단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시장 지배적 지위 독자 선택에 의한 것
불법행위 관련 없더라도 정정보도 청구
신문발행·유가판매 부수 공개는 합헌

■ 신문법·언론중재법 헌재 결정문 요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는 청구인 주장)

법 조항	조항 주요내용과 청구인주장	헌법재판소 판단
겸영금지 등 (제15조)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사·방송사 겸업 금지 -신문·뉴스통신·방송 법인 주식 절반 이상 소유자는 동일계열 타 신문·뉴스통신지분 절반 이상 취득 금지 ▲신문 복수소유·인수합병규제 통합 미디어 시대에 역행	**합헌** 신문이 뉴스통신, 방송 겸영하는 문제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 입법자의 미디어정책 판단에 맡겨야 한다.
자료의 신고등 (제16조)	-전체 발행부수·유가판매부수 공개 -구독·광고수입 공개 ▲정부에 비판적 논조를 띤 신문에 대한 투자 위축 우려	**합헌** 신문은 공적기능과 사회적 책임이 크기 때문에 투명성을 높이고 경쟁질서를 정상화해야 한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 조항 (제17조)	-1개 신문 시장점유율 전국 발행부수 30%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 -3개이하 사업자 시장점유율 60%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 ▲공정거래법상 과점은 75%. 60%로 규정한 근거 부족.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 신문에 점유율 규제하는 것은 부당	**위헌** 발행부수만을 기준으로 신문시장 점유율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 시장지배력은 신문에 대한 개별선호도가 작용 신문사업자를 일반사업자에 비해 더 쉽게 시장지배적사업자로 보는 것은 불합리
신문 발전위원회 설치 (제27조) 신문 발전기금 설치 (제33조) 신문유통원설립 (제37조)	-문화관광부에 신문발전위원회 설치 -정부출연금 등으로 신문발전기금 조성 -폭넓은 언론매체 선택권 보장할 수 있도록 신문유통원 설립 ▲시장지배적 신문 지원은 배제하고 있어 정권의 코드에 맞는 신문에만 혜택 정부의 언론 개입 소지.	**각하** 신문발전위원회가 법률적 권한을 행사할 때 비로소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현재는 직접성이 없다. 신문유통원 조항은 설립과 운영의 근거조항으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 없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 조항	조항 주요내용과 청구인주장	헌법재판소 판단
정정보도청구의 요건 (제14조, 제31조)	-언론사의 고의·과실, 위법성 없어도 정정보도 청구 -법원은 소장 접수후 3개월내 청구인 주장이 '명백한 거짓'이닌한 정정보도 명▲반론-대형 권력형 비리 보도 위축	**합헌** 정정보도청구권은 내용, 행사방법에서 필요이상 신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모친 상봉 김영남씨 기자회견

"우연한 경위로 北 넘어가 메구미씨는 병원서 자살"

28년 만에 모친을 상봉한 김영남(45)씨는 29일 자신의 북한 거주 경위와 관련, 납북 의혹을 부인하면서 우연한 경위로 북한에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 부인 요코다 메구미씨는 1994년 4월13일 병원에서 자살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이같은 발언은 지금까지 북한측이 주장해 온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아 자신의 납북과 전 부인 메구미씨의 사망 여부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측의 의혹이 해소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제14차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이뤄진 금강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교 1학년 재학 중이던 1978년 8월5일 선유도 해수욕장에 놀러갔다가 일련의 해프닝 속에 잠시 몸을 피하기 위해 해수욕장 인근에 있던 나무쪽배를 탔다가 망망대해로 흘러간 뒤 북측 선박의 구조를 받아 북으로 가게 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현재 자신의 직업과 관련, "특수부문, 구체적으로 통일부문 관련 사업을 보고 있다"면서 "당의 품에 안겨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딸 은경양이 김일성종합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아들 철봉군은 소학교를 다니고, 부인 박춘화씨는 당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며 장인은 평양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전했다.

김씨는 이어 "메구미씨는 결혼 전부터 병적인 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딸 은경이) 출산 후 좀 더 악화됐고 우울증에 정신이상 증세까지 나타나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다했지만 끝내 회복되지 못하고 숨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 번 자살시도가 있었다"며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결국 병원에 가서 자살한 것으로 됐다"고 강조했다.

김영남씨는 일본측에 건네준 메구미씨의 유골과 관련, "(일본의) 간곡한 부탁에 의해 유골도 넘겨줬다"며 "당시 일본 측 단장은 유골을 받으면서 내게 받았다는 것과 메구미 부모에게 전달하고 공표하지 않겠다는 자필 확인서도 남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골을 여기저기 나눠주며 감정놀음을 벌인 끝에 가짜라는 졸렬하고 유치한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며 "남편인 나와 메구미에 대한 모욕이고 참을 수 없는 인권유린"이라고 비난했다.

김씨는 이어 "나의 사생활이 정치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납치문제를 통한 일본의 대북압박을 비판했다. 김씨는 "지난 시기 나의 입북문제와 관련, 이러저러한 말들이 많았는데 정확한 견해 가졌으면 한다. 나의 입북은 납치도 자진월북도 아닌 대결시대 우연적으로 일어난 돌발적 입북"이라며 "나와 나의 가정 문제가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부탁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28년만에 남측 어머니 최계월(오른쪽)씨를 만난 북측 아들 김영남씨가 누나 영자(왼쪽)씨와 함께 29일 오후 금강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납북설을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 복귀 손학규지사 '100일 민심대장정'

첫 코스는 전남 장성

손학규〈사진〉 경기지사가 30일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친정'인 한나라당으로 돌아왔다. 그는 특히 30일 퇴임식을 마친 뒤 100일간 전국을 순회하는 '민심대장정'에 들어간다. 손 지사가 택한 민심대장정의 첫 코스는 전남.

손 지사 측 관계자는 29일 "퇴임 후 첫 일정으로 일단 수원역까지 도보로 이동한 뒤 열차편으로 30일 오후 장성군 황룡면을 찾아 2박 3일간 머물며 농촌 일손 돕기와 주민들과 만남의 자리를 갖는다"고 밝혔다.

손 지사는 장성군을 시작으로 오는 7월 2일 해남으로 이동, 11일까지 호남지역을 돌며 민생 탐방에 나선다. 유력 대권주자중 한사람이 공직을 떠난 직후 특정 지역을 찾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10여일 이상 한군데서 머무는 것도 지극히 보기 드문 경우다.

손 지사 측 관계자는 "퇴임 이후 본격적으로 민심을 읽기 위한 '대장정'"이라며 "국민들에게 좀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대중교통과 도보로 대장정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손 지사의 이런 행보가 관심을 끄는 것은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서울시장과 함께 당의 대권주자 '빅3'의 일원이기 때문. 손 지사는 특히 최근 각종 특강 등에서 기성 정치권과의 '차별화'를 강조하며 당내 조직력의 열세를 만회하고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 등에서 '빅3' 중 가장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손 지사의 행보가 더 적극적일 수 밖에 없다. 100일간 전국 순회 '민심대장정'도 이런 행보의 일환으로 보인다. 손 지사는 10월 중순 서대문에 대선 캠프 사무실을 열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